

『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7월 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7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7월 18일

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구미보건소장 구 건 회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구미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, 프로젝트 평가,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,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, 홍보 등 협의회 사업(안 제3조)
- 협의회 구성(안 제4조)
 - ※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참여. 붙임 별표 참고
- 의장 도시, 부의장 도시,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(안 제10조)

-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, 제17조)
- 협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(안 제18조)
-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
(안 제25조~제27조)
-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』은

- 구미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 “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”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에 의거 지방정부간 협의회에 의해 제정된 「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로 관계 법령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